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31 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이인선・박정하・강선영

성일종 • 박준태 • 김정재

고동진 • 조정훈 • 배준영
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해당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임.

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,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77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77조의3(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제77조의3(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「개발」 양도소득세의 감면) ① -----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|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(이하 이 조에서 "개발제한구역"이라 한 다)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 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 년 12월 31일-----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 면하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 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 -----2030년 12월 31일--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

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(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된 경우에는 5년)이내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혂행과 같음)